

## 물질승인 변경승인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
		90일(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 제7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80일)

신청인	상호(명칭)	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
	성명(대표자)	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(전자우편: )
	소재지(사업장)	(전화번호: ) (팩스번호: )

변경사항	변경 전	변경 후

수입자	상호(명칭)	법인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대표자	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	수입국

수탁자	상호(명칭)	법인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대표자	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	사업장 소재지

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본문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살생물물질 승인에 대한 변경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###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

첨부서류	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50,000원 (중기업은 25,000원, 소기업은 10,000원)
------	-------------------	---

#### 작성방법

-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란에는 선임된 자의 정보를 적고, 수입자란에는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.
-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란에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.

#### 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수	→	검토	→	변경사항이 기재된 통지서 작성	→	통지서 발급
--------	---	----	---	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

신청인

처리기관: 화학물질안전원